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안경위

- 행정국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지역교류협력기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3698)을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에 제출, 2026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했음.

2. 제안이유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 지역교류협력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기금결산 승인안을 작성하여 서울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제출되었음.

3.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총괄

- 행정국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지역교류협력기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행정국 소관 기금 현황 〉

기 금 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 치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평 화 통 일 기 반 조 성 기 금	2004	'27.12.31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지역교류협력기금	2007	'28.12.31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 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2021	'30.12.31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 행정국 소관 3개 기금(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지역교류협력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07억 1천 8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조성액(404억 1천 8백만원)보다 3억원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05억 1백만원이며, 사용액은 302억 1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40,418,235	299,713	30,501,288	30,201,575	40,717,948
남 북 교 류 협 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213,266	△105,201	1,352,133	1,457,334	33,108,065
지 역 교 류 협 력 기 금	1,987,204	△342,364	6,757,320	7,099,684	1,644,840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5,217,765	747,278	22,391,835	21,644,557	5,965,043

〈 202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기금명	전년도 이월액(A)	수입액(B)	지출액(C)	다음연도 이월액(D)	비고
남 북 교 류 협 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0	1,352,133	1,457,334	0	
지 역 교 류 협 력 기 금	0	6,757,320	7,099,684	0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0	27,609,600	27,609,600	0	

II. 검토의견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가) 기금의 운용 현황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1억원이 조성되었고, 현재는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²⁾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차원에서 지원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31억 8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조성액(332억 1천 3백만원)보다 1억 5백만원 감소하였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5천 2백만원이며, 사용액은 14억 5천 7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3,213,266	△105,201	1,352,133	1,457,334	33,108,065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나)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① 수입 결산

-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당초 수입 계획액은 335억 6천 4백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억 5천 1백만원을 증액한 344억 1천 5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345억 6천 5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0%(10억 1백만원), 변경 계획 대비 0.4%(1억 5천만원) 각각 초과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수입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월액(B)	수입계획액 수 현 (C=A+B)	징 수 결정액(D)	실 제 수납액(E)	수 납 률 (E / C)
	당 초	수 정 (A)					
계	33,564,143	34,415,446	0	34,415,446	34,415,446	34,565,398	100.4
예치금회수	32,279,468	33,213,266	0	33,213,266	33,213,266	33,213,266	100.0
이 자 수 입	1,284,675	1,202,180	0	1,202,180	1,202,180	1,278,495	106.3
기 타 수 입	0	0	0	0	0	73,637	-

〈 기금 수입계획액 대비 징수결정액 상 차이 발생 사유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수입계획액(A)	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	과부족액(B-A)	비율
공공예금이자수입	1,202,180	1,277,620	1,277,620	75,440	106.3
기 타 이 자 수 입	0	875	875	875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73,637	73,637	73,637	-

▶ 상세 사유

- 공공예금이자수입 : 정기예금 및 MMDA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등 수입 발생
- 기타이자수입 :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 발생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수입 중 ‘기타이자수입’과 ‘자체 보조금등반환수입’은 수입 계획 없이 수납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기금 수입계획 작성 기준에서³⁾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측하지 못한 세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징수결정·수납 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입·지출에 반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② 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당초 지출 계획액은 335억 6천 4백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억 5천 1백만원 증액한 344억 1천 5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345억 6천 5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0%(10억 1백만원), 변경 계획 대비 0.4%(1억 5천만원) 각각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지출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월액(B)	지출계 획 현 액 (C=A+B)	지출액(D)	다 음 연 도 이월액(E)	집 행 잔 액 (F=C-D-E)
	당 초	수 정 (A)					
계	33,564,143	34,415,446	0	34,415,446	34,565,398	0	△149,952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887,068	1,887,068	0	1,887,068	1,445,883	0	441,184
예 치 금	31,627,075	32,478,378	0	32,478,378	33,108,065	0	△629,687
기 본 경 비	50,000	50,000	0	50,000	11,450	0	38,550

3)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4.7., 284면 재인용.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출액(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887,068	1,887,068	1,445,883	△441,185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참여 저조로 집행잔액 발생 ○이산가족의날 문화행사 관련 유관 기관 공동주관으로 사업비 절감
기 본 경 비	50,000	50,000	11,450	△38,550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회의자료 제작비 등 집행잔액 발생
예 치 금	31,627,075	32,478,378	33,108,065	629,687	○미집행 비용자성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예치금(25년말 기금 잔액) 증가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동 기금의 “비용자성 사업비”는 2024년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까지 확대되며 집행률이 개선('23년 14.7% → '24년 60.7%)되었고, 2025년 집행률도 76.6%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금의 사업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 비용자성 사업비가 ‘회수’가 아닌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실제목적사업 집행은 부진하고, 기금이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재원을 보유·예치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 가능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실질적인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북한 인권 증진 사업까지 확대하였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 2.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 5.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7. 그 밖에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최근 4년간 “비용자성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5년	1,887,068	1,445,883	76.6
2024년	2,080,000	1,262,176	60.7
2023년	3,278,000	482,213	14.7
2022년	6,399,650	929,033	14.5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기본경비”는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운영 경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 9백만원(77.1%)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최근 3년간 “기본경비”의 과도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불용률 ’23년 90.0% → ’24년 72.6% → ’25년 77.1%), 위원회의 실제 운영 경비를 반영한 지출 계획 수립으로 불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지출 중 “기본경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100,000	10,000	90,000 (90.0%)	50,000	13,700	36,300 (72.6%)	50,000	11,450	38,550 (77.1%)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동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계획상 “예치금회수”를 9억 3천 4백만원 증액(당초 322억 7천 9백만원 → 변경 332억 1천 3백만원)하고, 지출 계획상 “예치금”을 8억 5천 1백만원 증액(당초 316억 2천 7백만원 → 변경 324억 7천 8백만원)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1차 (25.06.27)	<수입계획> ○공공예금이자수입 : 1,284,675천원 → 1,202,180천원(△82,495천원) ○예치금회수:32,279,468천원 → 33,213,266천원(증 933,798천원) <지출계획> ○예치금 : 31,627,075천원 → 32,478,378천원(증 851,303천원)	‘2024 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필요

라) 기금의 사업 검토

- 동 기금은 6개 사업에서 18억 8천 7백만원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4억 4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 4천 1백만원(불용률 23.4%)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D=C/A)
총 계	1,887,068	1,445,883	441,185	23.4
평화-통일 교육사업	372,000	361,695	10,305	2.8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180,000	77,916	102,084	56.7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310,000	308,475	1,525	0.5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755,068	549,640	205,428	27.2
자원봉사단 운영	50,000	44,375	5,625	11.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190,000	60,280	129,720	68.3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운영	215,068	158,548	56,520	26.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300,000	286,437	13,563	4.5
국내·외 협력기반 조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50,000	138,100	111,900	44.8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심사 수당 등	20,000	10,057	9,943	49.7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세부 사업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56.7%(1억 2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27.2%(2억 5백만원), “국내·외 협력기반 조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4.8%(1억 1천 2백만원),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심사 수당 등”에서 49.7%(1천만원) 등으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인 제도이며, 의회의 통제가 완화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모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실소요액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지출 계획 수립 노력이 요망됨.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리 철저 필요

- 동 기금 지출 현황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11억 3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 8천 4백만원(불용률 25.2%)을 불용처리하였음.
- 이 중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바, 이는 기금의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장(死藏)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 방식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의 기금을 편성·운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3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과도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불용률 '23년 83.3% → '24년 40.8% → '25년 25.2%), 이는 보조 방식 및 사업 설계의 적정성, 수요예측 실패, 민간사업자의 역량 등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보여, 실제 사업분석을 통한 민간보조사업 예산도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보조금 편성이 필요하며,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금 사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지출계화한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지출계화한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지출계화한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621,000	437,600	2,183,400 (83.3%)	1,600,000	946,525	653,475 (40.8%)	1,522,068	1,138,035	384,033 (25.2%)

- 동 기금으로 “평화·통일 교육” 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억 3천 8백만원을 교부하여 10억 7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6천 5백만원(불용률 5.7%)을 반납하였음.

※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민간경상보조’ 등 결산 현황 〉

(단위: 천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평화-통일 교육 사업 (민간경상보조)	346,500	337,036	9,464	1,296	1,296	9,464
남북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민간경상보조)	-	-	-	-	-	-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민간경상보조)	299,156	286,742	12,056	357	357	12,056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민간경상보조)	492,379	448,877	43,502	1,703	1,703	43,502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47,394	47,394	-	-	-	-
찾아가는 건강돌봄미 운영	158,548	129,829	28,719	20	20	28,7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286,437	271,654	14,783	1,683	1,683	14,783
합 계	1,138,035	1,072,655	65,022	3,356	3,356	65,022

- 또한, “평화·통일 교육”,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제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에서 자부담 약정액 미집행 사례에 따른 부당 집행액 반납(335만원)이 있으며, 개선사항으로 사업비 집행 투명성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보탬-e 교육 필수 수수료 등

보조금 집행지침 미숙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행정국은 보조금 사업의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보조금 정산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②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다양화 및 확대 필요

- 2024년부터 동 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자립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 대비 실제로 취업한 실적은 2024년 7명에서 2025년 8명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한 인원수를 고려할 때 취업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 교육 후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 취업알선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25년	'24년	'23년	'22년	교육기관
계		208	60	83	7	58	
매력일자리	참여 (취업)	45 (9)	19 (2)	18 (5)	5 (2)	3 -	서울시
코칭인력양성과정		55	-	-	-	55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맞춤형 영농교육		28	-	28	-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가사관리사		12	-	12	-	-	가사관리종합지원센터 (고용부위탁)
기술교육 (가구디자인, 전기기능 등)		7	-	5	2	-	서울시기술교육원
봉제교육		2	-	2	-	-	서울시패션제조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교육		2	-	2	-	-	케어런츠
신체활동지도		1	-	1	-	-	대교뉴이프

구 분		계	'25년	'24년	'23년	'22년	교육기관
브레인트레이닝		1	-	1	-	-	
인지놀이지도사		3	-	3	-	-	
무역기초		9	-	9	-	-	한국무역아카데미
병동간병인	참여 (취업)	10 (2)	8 -	2 (2)	- -	- -	(주)케어닥
마을버스 운전자	참여 (취업)	17 (2)	17 (2)	- -	- -	- -	서울시 교통연수원
소프트웨어 테스터		6	6	-	-	-	한국IT교육재단
경리회계 사무원 양성	참여 (취업)	10 (4)	10 (4)	- -	- -	- -	(사)미래한반도여성협회 부설 희망누리평생교육원

※ 출처: 행정국, 2026년 6월 8일 제출자료 재인용.

2. 지역교류협력기금

가) 기금의 운용 현황

-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을 통해 조성되고, 조성된 기금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등을 위해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관할 자치구 제외)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역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4) 따라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지역교류협력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4천 4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조성액(19억 8천 7백만원)보다 3억 2천 2백만원 감소하였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7억 5천 7백만원이며, 사용액은 70억 9천 9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987,204	△342,364	6,757,320	7,099,684	1,644,840

4)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① 수입 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의 당초 수입 계획액은 28억 7천 3백 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8억 7천 9백만원 증액한 87억 5천 3백만원으로 수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87억 4천 4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04.4%(58억 7천 1백만원) 초과 수납하였고, 변경 계획 대비 0.1%(840만원) 감소하여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월액(B)	수입계획 액 (C=A+B)	징 결정액(D)	실 수납액(E)	수 납 륜 (E / C)
	당 초	수 정 (A)					
계	2,873,441	8,752,966	-	8,752,966	8,744,524	8,744,524	100
전 입 금	1,600,000	1,600,000	-	1,600,000	1,600,000	1,600,000	100
예치금회수	1,162,543	1,987,204	-	1,987,204	1,987,204	1,987,204	100
이 자 수 입	98,177	98,177	-	98,177	89,734	89,734	91
보 조 금 반 환 수 입	12,721	67,585	-	67,585	67,585	67,585	100
예수금수입	-	5,000,000	-	5,000,000	5,000,000	5,000,000	100

- “예수금수입”은 당초 수입 계획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5년 4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 긴급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 2025년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48,238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에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 75명, 주택 전소 3,265채, 이재민 6,323명 등 대규모 피해 발생에 따라, 서울시는 영남 지역 피해 지역 구호 등을 위하여 50억원 증액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5년 5월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

- “이자수입”은 수입 계획(9천 8백만원) 대비 9.0%(8천 9백만원) 적게 수납되었는바, 향후 정확한 수입 추계를 위해 과거의 징수 실적과 금리 변동 추이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이 요망됨.

② 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은 28억 7천 3백 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8억 7천 9백만원 증액한 87억 5천 3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87억 4천 4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04.4%(58억 7천 1백만원) 초과 집행하였고, 변경 계획 대비 △0.1%(840만원) 감소하여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 액 (C=A+B)	지출액(D)	다 음 연 도 이월액(E)	집 행 잔 액 (F=C-D-E)
	당 초	수 정 (A)					
계	2,873,441	8,752,966	-	8,752,966	8,744,524	0	8,442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136,400	7,486,400	-	7,486,400	7,058,168	0	428,232
예 치 금	734,041	1,224,990	-	1,224,990	1,644,840	0	-419,850
예수금이자	-	38,576	-	38,576	38,575	0	1
기 본 경 비	3,000	3,000	-	3,000	2,940	0	60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출액(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136,400	7,486,400	7,058,168	4,921,768	'25년 영남 산불 지원 등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출액(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기 본 경 비	3,000	3,000	2,940	△60	집행잔액
예수금이자	-	38,576	38,575	38,575	'25년 영남 산불 지원을 위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예 치 금	734,041	1,224,990	1,644,840	910,799	'25년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예치금 증가

- “비용자성 사업비”의 당초 지출 계획액 21억 3천 6백만원이었으나, 2025년 4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 긴급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3억 5천만원 증액한 74억 8천 6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70억 5천 8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30.4% (49억 2천 2백만원) 초과 집행하였고, 변경 계획 대비 △5.7%(4억 2천 8백만원) 감소하여 집행하였음.
- 다만, “비용자성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한 후 4억 2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당시 산불 피해 긴급지원이라는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는 지출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실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금 운용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동 기금은 2025회계연도 6차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2차 변경은 지출계획 정책사업비의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편성 금액을 당초 지출 계획보다 237%(21억 3천 6백만원 → 71억 7천 6백만원) 증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결을 얻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의 금액의 20% 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1차 (‘25.2.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 사업비 신규편성(60백만원)	진주시에서 주최하는 정원산업박람회에 서울정원을 조성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홍보하고, 양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도모
2차 (‘25.4.3.)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증액편성(5,000백만원)	영남지역 산불 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증액 편성
3차 (‘25.6.6.)	‘산불피해지역 희망장터 운영’ 사업비 신규편성(55백만원)	경북·경남 지역 산불피해 농가 판로지원을 위한 직거래장터 개최
	예수금원리금 상환 항목 신설(39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한 지출항목 신설
4차 (‘25.6.27.)	기금규모 변경(7,873 → 8,753백만원)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825백만원, 기타수입 55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880백만원 증액	‘24년도 기금결산 내역 반영
5차 (‘25.7.24.)	‘2025 부산가든쇼 서울정원 조성’ 사업비 신규편성(200백만원)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부산가든쇼에 서울정원을 조성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홍보하고, 양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도모
	‘집중호우 피해복구 바로봉사단 운영’ 사업비 신규편성(15백만원)	충남 예산,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단 파견
6차 (‘25.9.17.)	‘독도의 날 기념 울릉도·독도 특별전시회 운영’ 사업비 신규편성(20백만원)	독도의 날(10.25.)을 기념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인물·문화를 알리는 특별전시회 개최

- 또한, 4차례(1차, 3차, 5차, 6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단년도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천재지변(산불, 수해 등)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님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단년도 사업 신규 편성은 의회의 사전심의권을 우회하여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금 설치 목적의 본질을 왜곡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기금을 일반 예산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사업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기금의 사업 검토

- 동 기금의 2025회계연도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단년도 사업(아래 표 ⑥ ~ ⑪)을 위해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98.8%(3억 4천 6백만원)를 집행하였음.
- 동 기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나, 일회성 이벤트나 체험 위주 사업은 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지속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근본적 목표 달성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지역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5회계연도 지역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D=C/A)
총 계	7,489,400	7,061,108	428,292	5.7
1.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7,486,400	7,058,168	428,232	5.7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B)	집행잔액 (C=A-B)	불용률 (D=C/A)
①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6,000,000	5,600,000	400,000	6.7
②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77,000	277,000	-	-
③ 랜선 나눔 캠퍼스	472,800	452,970	19,830	4.2
④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000	30,675	4,325	12.4
⑤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51,600	351,600	-	-
⑥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	60,000	59,499	501	0.8
⑦ 산불피해지역 “희망장터” 운영	55,000	53,350	1,650	3.0
⑧ 2025 부산가든쇼 서울정원 조성	200,000	199,160	840	0.4
⑨ 집중호우 피해복구 바로봉사단 운영	15,000	14,515	485	3.2
⑩ 독도의 날 기념 울릉도·독도 특별전시회 운영	20,000	19,400	600	3.0
2. 기본경비	3,000	2,940	60	2.0
효율적인 기금관리 지원(위원회 운영 등)	3,000	2,940	60	2.0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①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 “랜선나눔캠퍼스”는 서울 대학생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및 지역 중학생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멘토(1명)-멘티(3명)를 매칭하고, 비대면으로 기초 과목 중심의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기준 4억 7천 3백만원의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음.

〈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대학생 160명(멘토), 지방 거주 중학생 480명(멘티)
- 사업내용 : 멘토(1명) - 멘티(3명) 매칭을 통한 비대면 학습 멘토링
 - (학습과목) 기초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 중심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 (수업시간) 주 2회(회당 2시간), 월 8회(16시간) 수업 진행
- 추진방법 : 시-지자체-KT 간 협력채널 구축 및 역할분담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대학생 선발, 대학생 활동비 지원

지자체
지역 내 사업홍보, 지역 중학생 추천

KT
온라인 수업플랫폼 및 교재비 지원, 사업 운영

※ 출처: 행정국, “2025년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추진결과”, 2026.1., 2면 재인용.

〈 최근 3년간 랜선나눔 캠퍼스 운영 사업 실적 〉

2023년	2024년	2025년
(선발) 멘토 160명, 멘티 480명 (수료) 멘토 151명, 멘티 339명	(선발) 멘토 160명, 멘티 480명 (수료) 멘토 158명, 멘티 451명	(선발) 멘토 160명, 멘티 480명 (수료) 멘토 155명, 멘티 439명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교육 복지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런”이 타 지자체와의 협약(MOU)을 맺고 지방 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넓히고 있음.

※ 서울시-충청북도, 평창군과 ‘서울런’ 연계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24.12.)
 서울시-김포시와 ‘서울런’ 연계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25.2.)
 서울시-인천시와 ‘서울런’ 연계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25.4.)
 서울시-태백시와 ‘서울런’ 연계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25.7.)
 서울시-예천군과 ‘서울런’ 연계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25.9.)

〈 서울런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 ~24세
 - 중위소득 60%이하, 법정 한부모가족·학교 밖·다문화 가족·국가보훈대상·북한이탈주민 청소년·가족돌봄청년·건강장애학생·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등 포함
- 지원내용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1:1 멘토링 서비스 무료 제공
 - (온라인콘텐츠) 교과 / 자격증·어학 / 독서 중 1개 분야 선택 후 무제한 수강
 - (멘토링서비스) 주 1회 1시간(기본),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공공시설 등) 서비스

※ 출처: 서울시(<http://Seoul.go.kr>)-정책아카이브-서울런(최종방문 2026년 6월 7일).

- 최근 타 지자체의 청소년까지 “서울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으나, “랜선나눔캠퍼스”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민간(KT)에서 지원받고 있으므로,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런” 플랫폼 활용하여 지방 중학생들에게 한층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현재도 동 기금은 서울 대학생 멘토와 지방 멘티 간의 매칭 및 활동비로 지출되고 있는바, 기존 기금의 지출 구조는 유지하면서 “서울런” 플랫폼 연계·활용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가) 기금의 운용 현황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융자상환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조성된 기금은 전세자금(융자금액 최대 1억원, 융자기간 기본 2년(최장 6년))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음.
-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⁵⁾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임.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9억 6천 5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조성액(52억 1천 8백만원)보다 7억 4천 7백만원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23억 9천 2백만원이며, 사용액은 216억 4천 4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5,217,765	747,278	22,391,835	21,644,557	5,965,043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① 수입결산

-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당초 수입 계획액은 285억 2백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억 1천 3백만원을 감액한 280억 8천 9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276억 9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Delta 3.1\%$ (8억 9천 2백만원), 변경 계획 대비 $\Delta 1.7\%$ (4억 7천 9백만원) 각각 감소하여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월액(B)	수입계획액 현 (C=A+B)	징 수 결정액(D)	실 제 수납액(E)	수 납 륜 (E / C)
	당 초	수 정 (A)					
계	28,501,895	28,089,399	-	28,089,399	27,609,600	27,609,600	98.2
전 입 금	9,400,000	9,400,000	-	9,400,000	9,400,000	9,400,000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357,379	13,357,379		13,357,379	12,783,173	12,783,173	95.7
예치금회수	5,630,261	5,217,765	-	5,217,765	5,217,765	5,217,765	100
이 자 수 입	114,255	114,255	-	114,255	208,662	208,662	182.6

〈 기금 수입계획액 대비 징수결정액 상 차이 발생 사유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수입계획액(A)	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	과부족액(B-A)	비율
공공예금이자수입	114,255	208,662	208,662	94,407	182.6
융자금회수이자수입	589,379	748,773	748,773	159,394	127.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768,000	12,034,400	12,034,400	$\Delta 733,600$	94.3

▶ 상세 사유

- 공공예금이자수입 : 예치금 및 이자율 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이 당초 계획을 상회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 지원기간을 연장한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납 이자액이 증가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계획수립 당시 예상한 연도별 상환액보다 지원기간 연장을 선택한 지원자가 증가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당초 수입 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 부족은 기금의 주된 수입원(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에 대한 사전 예측이 정밀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바, 과다·과소하게 책정된 수입 추계는 결과적으로 기금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기금 수입 계획 수립 시에는 과거의 징수 실적과 금리 변동 추이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② 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당초 지출 계획액은 285억 2백 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억 1천 3백만원을 감액한 280억 8천 9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276억 9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1%(8억 9천 2백만원), 변경 계획 대비 △1.7% (4억 7천 9백만원) 각각 감소하여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월액(B)	지출계 획 현 액 (C=A+B)	지출액(D)	다 음 연 도 이월액(E)	집 행 잔 액 (F=C-D-E)
	당 초	수 정 (A)					
계	28,501,895	28,089,399	-	28,089,399	27,609,600	-	479,799
융 자 성 사 업 비	22,000,000	22,000,000	-	22,000,000	21,642,713	-	357,287
예 치 금	6,494,895	6,082,399	-	6,082,399	5,965,043	-	117,356
기 본 경 비	7,000	7,000	-	7,000	1,844	-	5,156

〈 당초 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출액(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융자성사업비	22,000,000	22,000,000	21,642,713	△357,287	선정자 중 이사계획 변경, 지원포기자 등으로 잔액 발생
기 본 경 비	7,000	7,000	1,844	△5,15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잔액 발생
예 치 금	6,494,895	6,082,399	5,965,043	△529,852	지원기간을 연장한 지원자가 증가하여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치금이 감소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예치금”은 당초 64억 9천 5백만원으로 계획하고, 회계연도 중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60억 8천 2백만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4억 1천 3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실제 예치된 예치금은 59억 6천 5백만원으로 변경된 지출계획보다도 1억 1천 7백만원을 적게 예치하였음.
- 기금의 예치금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변경 계획 대비 저조한 예치금 적립은 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금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기본경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경비로, 지출 계획액은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84만원을 집행하고, 516만원(73.7%)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최근 3년간 “기본경비”의 과도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불용률 '23년 74.0% → '24년 73.7% → '25년 73.7%), 최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됨에 따라 “기본경비” 실제 지출 소요가 감소하였으므로, 차년도에는 이를 반영한 지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출 중 “기본경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7,000	1,817	5,183 (74.0%)	7,000	1,839	5,161 (73.7%)	7,000	1,844	5,156 (73.7%)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동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 계획상 “예치금회수”를 4억 1천 3백만원 감액(당초 56억 3천만원 → 변경 52억 1천 8백만원)하고, 지출 계획상 “예치금”을 4억 1천 3백만원 감액(당초 64억 9천 5백만원 → 변경 60억 8천 2백만원)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의 금액의 20% 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1차 (‘25.05.22)	○ 예치금 회수가 당초 5,630백만원에서 5,218백만원으로 변경(△413백만원)되어 예치금을 당초 6,495백만원에서 6,082백만원으로 변경(△413백만원, △6.4%)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5,630백만원 ⇒ 5,218백만원(감 413백만원) - (지출계획) 「예치금」 6,495백만원 ⇒ 6,082백만원(감 413백만원)	○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운용계획 변경 필요

라) 기금의 사업 검토

- 동 기금은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최대 2억원(다자녀 2억원, 신혼부부 1.5억원, 일반·1인가구·신규직원 1억원),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대 6년)을 지원하고 있음.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포함, 소방직 제외(별도 시행)
- 모집기간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그룹배정 : 일반(32%), 신혼(27%), 다자녀(18%), 신규(18%), 1인가구(5%)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2억원
 - 다자녀 2억원, 신혼부부 1.5억원, 일반·1인가구·신규직원 1억원
 - 이자율 : 연 1%(보증보험료 약 0.3% 별도)
 - ※ 임대보증금 6.3억원 이하 주택(세대원 3인 7.3억원, 4인이상 8.3억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채권양도 설정

- 2025년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직원 대상으로 현실적인 주거지원 강화 필요 등에 따라 전세금 지원 규모를 연 180억원에서 연 22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청 수요가 높은 신규 직원과 1인 가구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2025년 그룹별 무주택전세자금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직원('24년 53명 → '25년 40명)과 1인 가구('24년 62명 → '25년 59명)의 수혜 인원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한도 상향 및 신청·선정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그룹별 전세자금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신규직원	1인가구
2025년	신청인원	452	79	66	40	53	116
	지원인원	209	40	48	22	40	59
	지원금액	21,643	3,586	6,016	3,395	3,597	5,049
2024년	신청인원	350	166	29	6	73	76
	지원인원	196	54	24	3	53	62
	지원금액	16,669	4,608	2,292	300	4,563	4,906
2023년	신청인원	438	170	71	5	95	97
	지원인원	202	55	45	3	52	47
	지원금액	18,000	4,863	4,225	300	4,592	4,020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자금 지원 신청 인원은 1,815명이고, 이 중 54.7%(993명)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금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신청자의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 최근 5년간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 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86,500	83,301 (96.3%)	1,815	149,425	993	964	83,301	1.8 : 1
2025년	22,000	21,643 (98.4%)	452	36,239	206	209	21,643	2.2 : 1
2024년	18,000	16,669 (92.6%)	350	30,690	202	196	16,669	1.7 : 1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 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23년	18,000	18,000 (100%)	438	37,685	202	202	18,000	2.2 : 1
2022년	15,500	15,405 (99.4%)	320	27,030	183	182	15,405	1.7 : 1
2021년	13,000	11,584 (89.1%)	255	17,781	200	175	11,584	1.4 : 1

※ 출처: 행정국, 2026년 5월 21일 제출자료 재인용.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